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64
----------	-----

2024. 9. 11.(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현문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4년 8월 23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8월 26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9월 4일

-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현문 의원)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 내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 및 양육
친화 사회환경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아이돌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정책목표, 재정 조달 방안, 사업 활성화 방안 등 포함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비용 지원, 교육·훈련,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등 포함
-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아이돌봄서비스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규정을 명시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충청북도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자치법규상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맞벌이 가정 등에 대한 돌봄 지원 강화를 통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되었음.
- 충청북도의 맞벌이 가구 비중은 2023년 기준 53.5%¹⁾로, 이는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수치이며,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약 5번째의 높은 수준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음.
여기에, 아이돌봄사업의 대상에 해당하는 생후 3개월 이상에서 12세 이하에 해당하는 도내 영유아 및 아동은 총 142,390명으로, 시간제 돌봄과 영아종일제 돌봄, 질병감염 아동 돌봄, 기관연계 돌봄 등 4개 사업이 11개 시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지원되고 있음.

1)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통계청, 24.6.18.)

- 국내 전체 맞벌이 가구 611만 5,000가구(48.2%), 충북 맞벌이 가구 22만 3,000가구(53.5%)

<참고 1> 돌봄서비스 종류 및 이용 기준

돌봄서비스 종류	이용 기준
시간제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 (기본형) 11,630원 / 시간 (종합형) 15,110원 / 시간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지원 시간은 연간 960시간 이내
영아 종일제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요금 : 11,630원 / 시간 · 정부지원 시간은 월 80~200시간 이내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질병감염 아동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12세 이하 아동 (병원이용 동행, 재가돌봄 제공) - 이용요금 : (기본형) 13,950원 / 시간 ·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기관연계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12세 이하 기관이용 아동 (아동돌봄수요 증가 특정시간대 보조인력 지원) - 이용요금 : 18,600원 / 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 특히,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이용한 누적 아동 수는 16,492명에 달하고 있으나, 도내 사업기관 소속으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750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참고 2> 2024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실이용 아동수 현황 (24년 7월 말 기준)

(단위: 명)

실이용 아동수(누적)				
시간제	영아 종일제	질병 감염 아동	기관 연계	합계
15,640	196	329	327	16,492

<참고 3> 충북 도내 아이돌봄미 현황 (24년 7월 말 기준)

(단위 : 명)

계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750	238	177	128	18	26	18	32	54	24	26	9

- 이렇게 사업 대상 아동 대비 아이돌봄미 수 부족과 도내 지역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 시간 등 근무 조건의 편차가 큰 상황에서, 돌봄 지원이 필요한 도내 가정에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본 조례의 제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제4조(국가 등의 지원),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제26조(비용의 보조) 및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의 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서비스 비용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법 적합성도 타당함.
-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아이돌봄미 처우를 개선하여 돌봄의 질이 향상되고, 안정적인 지원으로 아이돌봄이 더욱 활성화된다면 건강하고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본 조례안은 맞벌이 비중 증가 등으로 인해 아이돌봄 공백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충청북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일과 가정’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안 제1조의 목적은 타당한 것

으로 판단됨.

○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 (안 제2조)

- 본 조례안의 정의 규정은 집행 과정상 명확성과 법 체계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상 용어의 정의와 통일을 이루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보여짐.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해당 조항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한 본 조례의 입법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규정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제2항에서 규정한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는 이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미스매칭 및 비용의 부담, 시간의 부족 등이 우려되고 단순 돌봄뿐만 아니라 식사 및 학습지원, 병원 입원시 돌봄 등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단계적인 제도 개선 노력의 필요성을 명시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 4> 「아이돌봄 지원법」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아이돌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음.

이는 지원계획에 아이돌봄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과제 및 방법,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해 급속히 변화 및 증가하고 있는 아이돌봄 사업에 대한 수요 및 요구에 선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시함. (안 제5조)

- 도지사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과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과 함께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포함해 명시함.
- 이와 함께, 제2항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지역 아이돌봄 서비스의 전반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운영을 명시함. (안 제6조)

-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을 명시한 것으로, 지난 해 5월 개소한 충청북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 운영, 시·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업무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단 운영 등 지역 아이돌봄서비스 기능 전반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음.

○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제8조)

- 안 제7조에서는 보호자와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함을 명시함.
- 안 제8조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 관계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 아이돌봄 지원사업 사무의 위임·위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안 제9조)
 -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지원사업의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아이돌봄 지원법」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역 맞춤형 아이돌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규정한 것임.
- 특히, 아이돌봄 지원을 통해 아이의 복지증진 및 일·가정 양립을 바탕으로 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법적·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제정 필요성도 타당하다고 보여짐.
- 또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및 지원사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추진 근거를 담아 아이돌봄 서비스의 개선을 통한 도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서비스제공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아이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아이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5. 전년도 지원계획의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사업
3.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4.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도지사는 법 제10조의4에 따라 원활한 아이돌보미의 관리 및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도지사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참여 확산을 위해 보호자,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 충청북도교육청, 관계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위임·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2022. 12. 27.>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5.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
6.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5. 19.>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⑤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제3항에 따른 적성·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19.>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3.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4.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5.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지원 및 서비스 홍보
6. 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 및 지정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 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2011. 9. 15.>

②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충청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효율적인 충청북도 아이돌봄 사업을 통해 일·가정 양립 및 양육 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 아이돌봄 및 가족센터 등 종사자 처우 개선 경비

3. 관련조문 (안 제5조, 안 제6조)

-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제5조 1호)
-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사업(제5조 2호)
-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제5조 3호)
-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제5조 4호)
-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제6조)

4.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5조(지원사업) 및 안 6조(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에 의거 비용 추계

나. 추계 결과

- 2025년부터 향후 5년간 96,301백만원(국비 66,625, 도비 9,651, 시군비 20,025)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 지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043-220-391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세 출	96,301,000	5,665,000	22,659,000	22,659,000	22,659,000	22,659,000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국비 70 : 도비 9 : 시군비 21)	93,815,000	5,519,000	22,074,000	22,073,983	22,074,000	22,074,000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도비 40 : 시군비 60)	138,000	8,000	32,500	32,400	32,500	32,500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국비 50 : 도비 50)	1,910,000	112,000	449,500	449,512	449,500	449,500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도비 100%)	35,000	2,200	8,200	8,400	8,200	8,200
가족센터 등 종사자 처우 개선 (도비 40 : 시군비 60)	403,000	23,800	94,800	94,800	94,800	94,800